



STATE OF NEW YORK
STATE BOARD OF ELECTIONS

알바니, 뉴욕
2009 년 7 월 15 일

증명서

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분들께

2009 년 11 월 3 일 화요일 총선거 에 아래와 같은 제안안이 승인을 위하여 제출됨을 통보 합니다:
두번째 제안안, 수정안.

두번째 제안된 수정안의 본문

상원 과 하원의 동시 결의안

헌법 제 3 조 수정안 제안안은, 의회가 죄수들에게 비영리 단체를 위한 자원 봉사를 할수 있도록 하락 할수 있다는 것에 관한 것 입니다.

제 1 항. 결의안 (상원의원 동의시), 헌법 제 3 조, 제 24 항 은 아래의 같이 수정할 것 입니다:

§ 24. 주의회는 법에 의거, 주내의 감옥, 교도소, 구치소, 주감화원의 죄수들을 위한 직장 과 고용을 추진할것이며; 이에 따라, 감옥, 감화원, 구치소,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강요 나 허용은 허락하지 않으며, 감옥에 잇는 동안은 상업, 직업 또는 직업에 관련되는각자의 유익을 위한 어떤 특정한 단체나 회사 와의 취업 과 임대, 계약 등의 절차는 허락하지 않으나, 입법부는 상기한 죄수들의 비영리 단체를 위한 자원봉사는 허락 할 것 입니다, 이 항에서 언급한 “비영리 단체” 란, 종교, 자선, 또는 교육을 목표로 운영되는 어떤 개인이나 주주의 수입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. 이 항은, 죄수들의 채용과 생산물이 주 또는 구에 따른 정치 기관, 또는 주 관하의 공공기관, 또는 정치 기관의 참여를 방지하려하는것은 아닙니다.

설명—설명 중 밑줄 그은 것은 새로 삽입 된 사항 이고; [] 표시 안에 사항은 옛날 것 으로 삭제 될 것 입니다.

§ 제 2 항. 결의안 (상원의원 동의시), 선거법 조항들에 의거하여 위에 기술한 수정안이 2009 년에 실시되는 총선거 에서 유권자의 승인을 받기위해 제출 될 것 입니다.

두번째 제안된 수정안 발췌

이 수정안의 목적은 의회가 주 와 지방 의 죄수들이 비영리 단체 의 자원 봉사 를 가능하게 허락하기 위함입니다.

주 헌법 제 3 조 제 24 항 은 현재 죄수들이 개인, 단체 또는 주식회사 에게 노동을 임대, 계약, 부여함을 금지 합니다. 그러나 죄수들이 주정부 나 그의 정치적 단체 에서의 노동은 가능 합니다.

이 제안된 수정안은 의회가 죄수들이 비영리단체를 위하여 일할수 있는 법을 통과 할수있게 함 입니다. “비영리 단체” 의 정의는 오직 종교, 자선, 또는 교육 달성을 위하여 운영됨을 의미하며 , 어떤 개인이나 주주들의 수입이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닙니다.

두번째 제안된 수정안의 제출 형식

헌법 제 3 조 수정안은, 입법부가 죄수들이 비영리단체에 자원노동함을 승인 함에 관한 것 입니다.

이 제안된 수정안은 입법부로 하여금 주정부 와 지방 교도소의 죄수들이 비영리단체에 노동을 허락하는 법안을 통과 함을 허락하는 제안안 입니다. 이 제안된 수정안이 승인되어야 합니까?

위에 기술한 두번째 제안된 수정안의 본문은, 주정부의 증명서 목록에 있는 원본의 정확한 사본입니다.

뉴욕주 선거관리 위원회
2009년 7월 15일

2009년 7월 15일 알바니 시(City of Albany)
에 위치한 주정부 선거 관리 위원회의 보증
하에 제출됨.